ESG경영위원회 운영 지침

제정 2024. 4. 23.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환경(Environmental), 사회(Social), 투명(Governance) 경영 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 ESG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임무)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진흥원의 ESG경영 전략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심의
 - 2. 진흥원의 ESG경영 추진 성과에 대한 점검 및 자문
 - 3. 기타 진흥원의 ESG경영과 관련한 주요 의결사항
- 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내부위원,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진흥원장이 되고, 내부위원은 「직제규칙」에 의한 본부장급인 직위자가 된다.
 - ③ 외부위원은 ESG 분야 및 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흥원장이 위촉한다.
 -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- 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간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제6조(운영부서) 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실무적인 사무 총괄은 「직제규칙」에 따른 ESG 업무 총괄부서가 전담한다.
- 제7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위원장이 정한다.
 -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선임하고,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부 칙<2024. 4. 23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